

강원도립대학교 실습선운항에 따른 직접경비 처리지침

(제정) 2002-02-06

(개정) 2004-07-20

(개정) 2016-04-25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강원도립대학교 소속 부속시설인 실습선을 건조 및 취득목적에 따라 학생승선실습 또는 본 대학교 주관의 연구조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운항할 경우의 직접경비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6.4.25>

제2조(직접경비의 정의) 직접경비라 함은 실습선의 운항에 필요한 유류, 청수 및 기타 소모품으로서 실제 사용한 물품의 양을 금액으로 환산한 경비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규와의 관계) 실습선 운항에 따른 직접경비 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직접경비의 적용) ① 실습선 운항을 허가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사용료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접경비는 부담하여야 한다.

② 본 대학교의 산·학·연 협력관련이나 부속기관이 주관하는 단체가 비영리 공공의 목적으로 실습선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총장이 학생승선실습 또는 본 대학교 주관의 연구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이의 사용에 따른 직접경비를 부담해야 하고 직접경비 외 운항관련 기타 지원사항(급식 등)은 사용자 측에서 별도 부담하도록 한다. <개정 2016.4.25>

제5조(직접경비의 산출) 제4조에 의해 실습선을 운항한 선장은 실제 소모된 유류, 청수 및 기타 물품의 양을 실습선관리·운영지침 제13조①항의 서식6호의 귀항보고서에 산출해야 한다.

제6조(소모물량 공급) ① 선장은 제5조에 의해 산출한 소모량을 사무국에 제출한다.

② 사무국은 제1항에 의거 직접 사용한 물품내역을 실습선을 사용한 기관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7조(기타사항) 기타 특별한 실습선 운항관련 경비는 회계부서와 별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(2002. 2. 6)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7. 20)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